

[심사결과]

- 심사 대상 청구항 : 제1-3항
- 이 출원의 거절이유가 있는 부분과 관련 법조항

순번	거절이유가 있는 부분	관련 법조항
1	제1항 내지 제3항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2	제1항 내지 제3항	특허법 제29조제2항

[구체적인 거절이유]

1. 이 출원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재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청구항 제1항 발명의 말미에는 ‘~주차 브레이크에 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불명료할 뿐만 아니라, 청구범위 역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항 제1항 발명은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또한, 청구항 제2,3항 발명은 기재불비가 내재된 청구항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발명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 인용발명1 : 중국특허공개공보 102039974(2011.05.04. 공개)에 게재된 발명

◎ 인용발명2 :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1-0006057호(2011.06.16. 공개)에 게재된 발명

가. 청구항 제1항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항 제1항 발명은 주차브레이크에 관한 것이고, 출원발명과 기술분야가 공통되는 인용발명1은 차량 주차브레이크 구조에 관한 것으로, 양발명의 주요구성들은 하기 표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상호 대비될 수 있습니다.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 발명과 인용발명1의 주요구성 대비표]

주요구성	청구항 제1항 발명	인용발명1	비 고
구성①	브레이크레버(5)와 브레이크레버 홀더(6)를 결합하는 바로 윗 지점에 위치시킨 뒤 그 점을 함께 볼트로 고정하는 파크브레이크홀더(4)	-	차이
구성②	푸쉬버튼캡(1)	버튼부(311)	실질적 동일
구성③	리턴스프링(2)	탄성부품(32)	실질적 동일
구성④	브레이크레버(5)를 잡고 푸쉬버튼캡(1)을 누르면 스톱퍼핀(3)이 그 틈 사이로 내려가 간격을 벌리게 되면서 브레이크 작동상태를 유지하고 브레이크레버(5)를 다시 쥐면 리턴스프링(2)에 의해 스톱퍼핀(3)이 다시	브레이크시스템을 동작하고 버튼 부(311)을 눌러 하향 이동시키면 우산 모양의 후크(312)가 브레이 크핸들(5)의 정지부(52)에 위치하 여 브레이크핸들(5)을 잠금상태로 제한하는 주차브레이크장치(3)	실질적 동일

	원위치로 복귀하면서 브레이크 작동상태를 해제하는 스톱퍼핀(3)	의 스톱퍼핀	
--	--	--------	--

상기 표에 대비된 내용을 요약하면, 청구항 제1항 발명과 인용발명1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요구성들[구성②~④]을 개시하고 있으며, 양발명의 주요구성들[구성②~④]은 '이륜차의 브레이크장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일치합니다[인용발명1의 도면3~6 및 발명의 설명[0019]단락 참조].

다만, 청구항 제1항 발명의 파킹브레이크홀더(4)[구성①]가 인용발명1에 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인용발명2에 개시된 볼트와 같은 단속수단(112)으로 핸들프레임(103)과 결합되는 브레이크바디(110) 설치구조에 비해 각별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인용발명2의 도면1~5 및 발명의 설명[0017~0033]단락 참조].

또한, '인용발명1 및 인용발명2는 동일분야 기술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인용발명1의 차량 주차브레이크 구조에 인용발명2에 개시된 브레이크바디(110) 설치구조를 전용 및 결합하는 것은 당해 목적 및 필요에 따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의 기술상식 범위 내에서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쉽게 착안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므로, 그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운전자가 브레이크 조작을 함에 있어 간섭이 생기지 않고, 브레이크레버의 표면에 외관상 흠집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청구항 제1항 발명의 작용 및 효과 역시 인용발명1.2에 개시된 주요구성 및 세부결합관계의 단순 설계변경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저히 향상된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 발명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발명1 및 인용발명2'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항 제2항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항 제2항 발명은 제1항에 있어서, 파킹브레이크홀더(4)는 그 밑면을 위치하게 될 브레이크레버홀더(6)와 브레이크레버(5) 윗면의 형상대로 모양을 파내어 안착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인용발명2에 개시된 브레이크레버(106)와 레버브라켓(104)의 상단에 위치하며, 핸들프레임(103)과 결합된 브레이크바디(110)의 단순 형상 변경에 불과한 기술사항이어서, 그 구성상 별다른 어려움이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 이로 인한 작용 및 효과 역시 예측 가능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인용발명2의 도면1~5 및 발명의 설명[0017~0033]단락 참조].

따라서, 청구항 제2항 발명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발명1 및 인용발명2'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습니다.

다. 청구항 제3항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항 제3항 발명은 제1항에 있어서, 스톱퍼핀(3)은 고속회전이 가능한 머시닝센터로 1차 절삭가공을 한 뒤, 그 표면을 다른 고체의 모서리나 표면으로 문질러 매끈하게 하는 연마 혹은 표면에 금속 중 하나인 크롬을 얇은 층으로 입히는 크롬도금의 2차 과정을 통하여 표면의 조도를 고르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인용발명1에 개시된 주차브레이크장치(3)의 스톱퍼핀을 제작함에 있어, 일반기계 가공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주지의 절삭가공과 더불어 연마 또는 크롬도금을 적용하는 것에 불과한 기술사항으로, 당해 목적 및 필요에 따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의 기술상식 범위 내에서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쉽게 착안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서, 그 구성상 각별한 어려움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3항 발명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발명1 및 인용발명2'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습니다.

[첨 부]

첨부1 중국특허공개공보 102039974(2011.05.04.) 1부.

첨부2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1-0006057호(2011.06.16.) 1부. 끝.